

이 보도자료는 2023. 11. 24.(금)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남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황우진

전화 02-3219-4420 / 팩스 02-3219-2397

# 보도자료

2023. 11. 24.(금)

##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원대 편취한 발행업체 대표와 시세조종업자 등 8명 기소(2명 구속)

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(단장 이정렬)은 **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의혹 사건**을 수사한 결과, '21. 4. 28. ~ 5. 6. 코인 사업 관련 허위 공시,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피해자 약 6,100명으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한 발행업체 대표와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등 8명(2명 구속, 6명 불구속)을 오늘(11. 24.) 사기죄로 기소하였음

\* 퓨리에버 코인은 2023. 3. 발생한 「강남 납치·강도살인 사건」 관계자들간 분쟁의 원인이 된 가상자산으로서 위 사건으로 6명이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 10. 25. 1심에서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

● 합동수사단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**코인 발행자 — 코인 컨설팅업자 — 코인 브로커 — 코인 전문 시세조종(MM, Market Making)업자와 MM 기술자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된 MM작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실체를 규명하고, 그 구체적 범행구조를 최초로 확인하였음**

- 이 사건에서는 ① 코인 발행업체가 MM업자에게 시세조종에 쓰일 코인 물량을 제공하고 MM업자와 범행수익 분배비율까지 사전 약정 ② 시세조종과 동시에 실행되는 발행업체의 호재성 허위공시 ③ 코인 유통의 공급물량을 제어하여 시세조종 효과 극대화 ④ 자동주문체결 프로그램(일명 '봇')을 통한 대규모 가장·통정거래 등 수법이 총동원되었는바,

-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과 유사한 수법(①②)은 물론, 가상자산시장 특유의 시세조종 수법(③④)이 모두 활용된 것으로, 시세조종 범행과 관련된 가상자산시장의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,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됨

● 앞으로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,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

# 1 사건 개요

## 가. 피고인

	피고인	지위 및 역할	처분
1	A(58세, 구속)	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 대표 [허위공시·시세조종(MM, Market Making) 물량제공]	'23. 11. 24. 구속기소
2	B(48세, 구속)	전문 시세조종(MM)업자 [H에게 MM 실행 지시]	
3	C(40세)	코인 컨설팅업체(코인 상장, 유통 등 자문) 대표 [MM 물량 제공]	'23. 11. 24. 불구속기소
4	D(30세)	전문 시세조종(MM)업자(일명 'MM팀') [A·C로부터 MM작업 의뢰받고 B에게 MM작업 재의뢰] ※ 서울중앙지검 10.13. 특수강도 등으로 구속기소	
5	E(30세)		
6	F(37세)		
7	G(33세)		
8	H(47세)	시세조종(MM)기술자 [B의 지시로 MM 실행 : 자전거래 프로그램 개발·구동]	

※ MM팀(D, E, F)은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MM작업을 의뢰받아 B에게 MM작업을 재의뢰하고, B는 MM작업을 MM기술자 H에게 지시하여 실행하는 구조

## 나. 공소사실 요지

- '21. 4. 28. ~ 5. 6. 퓨리에버 코인에 대한 허위공시, 시세조종 등을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매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여,
  - A와 C는 G의 소개로 알게 된 MM팀(D, E, F)과 B에게 MM작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퓨리에버 코인 5,520만 개를 전송해준 것임에도, 마치 퓨리에버 발행업체의 '미세먼지 저감 사업' 등을 위한 협력업체에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,
  - MM팀(D, E, F)과 B는 MM기술자 H를 동원하여 자전거래·통정거래 등의 시세조종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약 6,100명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매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210억원을 편취 **[사기]**

## 다. 수사 경과

- '23. 3. 29. 「강남 납치·강도살인 사건」 발생
- '23. 7. 26.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 출범
- '23. 9. 수사착수(푸리에버 코인 시세조종·허위공시 관련 분석 등)
- '23. 11. 7. A, B 구속
- '23. 11. 24. A, B 구속 기소, C, D, E, F, G, H 불구속 기소

## 2 수사 착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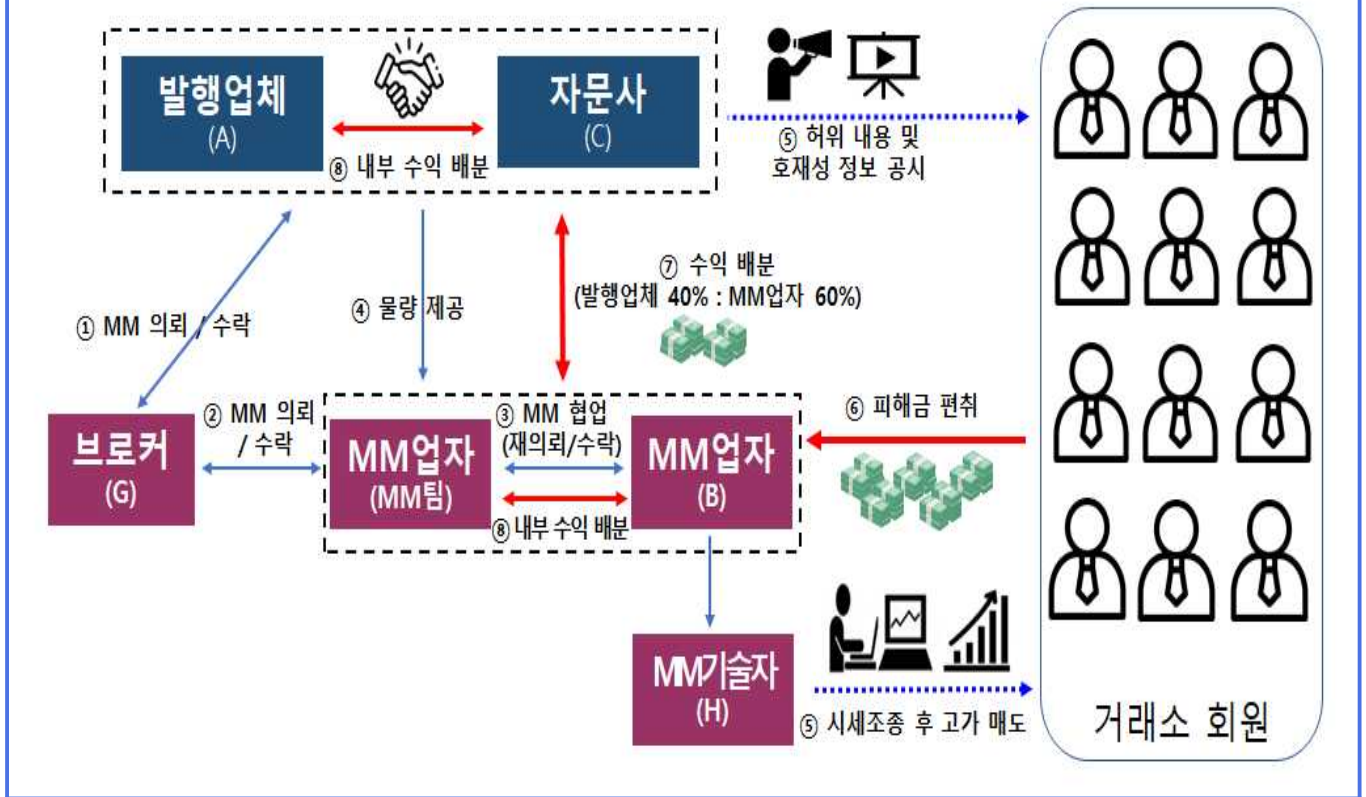
- '23. 3. 29.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·강도살인 사건은 푸리에버 코인을 둘러싼 금전적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되었음
  - ※ 위 사건으로 6명이 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지난 10. 25. 주범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음
- 위 사건 이후 다수 언론에서는 '푸리에버 코인에 대한 시세조종이 있었고, 그로 인해 많은 코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'는 의혹을 제기하였음
- '23. 7. 26.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한 「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」은 이와 같은 시세조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음
  - ※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리스크를 제거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하여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, 금융감독원, FIU, 국세청, 관세청, 예금보험공사,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·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지난 7. 26. 출범

## 3 수사 결과

### 가. 범행 구조

- 코인 발행자, 코인 컨설팅업자, 코인 시세조종 전문가, 코인 전문 브로커, 코인 시세조종 기술자 등이 총동원된 조직적·지능적·계획적 범행임
-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허위 공시와 시세조종을 병행하여 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후 고점에 매도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약 6,100명으로부터 210억원을 편취한 것임

##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구조도



### 나.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 사기 범행에서 나타난 특이점

####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(MM)과 유사한 수법 활용

##### ● 코인 거래에도 전문 MM업자를 동원한다는 사실 최초 확인

-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와 전문 MM업자는 코인 브로커 소개로 시세조종을 모의하면서 시세조종에 따른 수익분배비율[40%(발행업체) : 60%(MM업자)]을 약정하고, 시세조종 진행과정에서 총 5회에 걸쳐 MM수익을 정산하였음
-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, 코인 발행자 - 코인 컨설팅업자 - 코인 브로커 - 코인 MM업자 - 코인 전문 MM기술자가 연결되어 조직적으로 MM작업을 벌인다는 소문의 진상과 함께 이들의 구체적 범행구조를 최초로 확인하였음

## ● 사전에 호재성 허위정보 준비,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 살포

- 코인 발행업체는 미세먼지 저감·공기청정 사업 등을 코인 발행 명목으로 내세웠으나, 관련 프로그램은 데이터 부족 등 문제로 상용화가 불가능하였음
- 그럼에도 마치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시세조종 기간에 집중 공시하여 코인 가격을 단기에 급격히 상승시키는 소재로 활용하였음

## 가상자산 거래 특유의 시세조종 수법도 동원

### ● 일명 '가두리 펌핑(Pumping)' 방식 활용, 가격부양 극대화

- 코인 발행업체는 테스트를 빙자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을 락업(Lock up)<sup>1)</sup>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로의 코인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가격결정 요소 중 공급 측면을 제어하였음
- 이에 따라 제한된 코인 유통량 하에서 가장·통정거래 등 시세조종 작업(소위 '가두리 펌핑')을 수행하여 손쉽게 코인 가격을 상승시킨 것임

### ● 자전거래봇에 의한 거래량 증가, 수수료 절감을 위한 VIP 계정 활용

- 이 사건 시세조종에 자전거래 프로그램(일명 '자전거래봇')을 동원한 결과, 퓨리에버 코인 거래량 분석에서 시세조종 기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그 직전 일평균 거래량보다 4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

※ 실제로 H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'자전거래봇' 구동 장면이 목격되었음

- 퓨리에버 코인 MM 일당은 거래수수료가 현저히 저렴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VIP계정<sup>2)</sup>을 부여받아 거래수수료에 대한 부담 없이 '자전거래봇'을 이용하여 대규모 자전거래를 실행한 사실도 확인하였음

1) 이체, 매도 등 코인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

2) 퓨리에버가 상장된 거래소는 일정 거래 규모 이상의 회원에게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VIP 프로그램 운영함

## 가상자산 투자 유의사항

가상자산시장은 주식시장과 비교하여 시세조종에 더 취약한 측면이 있으므로 투자 결정시 유의해야 함

- ① 가상자산시장은 상시(24시간) 거래가 가능하고, 상·하한가 제한이 없는 반면, 투자자들은 단기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유인이 높음에도 이를 감시·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② 가상자산시장은 허위공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허위·과장 공시를 남발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기 쉬운 구조임
  - 특히, 발행업체와 투자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더 크고, 불충분한 투자정보 제공이 업계에 만연하여 허위정보 공시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이 큼
- ③ 발행업체는 투자자 동의 없이도 물량을 통제하는 락업(Lock up) 설정이 가능하므로 MM업자와 결탁할 경우 제한된 코인의 유통량 하에서 시세조종 작업(소위 '가두리 펌핑')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쉬움
- ④ MM업자는 거래수수료가 저렴한 특정 가상자산거래소의 VIP계정을 사용하고, '자전거래봇'을 이용하여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 시세조종이 용이함
  - 주식시장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증권사가 그 주문을 수탁받는 것을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반면, 가상자산시장은 이러한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장치가 없음

### 다. 전문 시세조종업자의 실체 확인

- MM팀(D, E, F)은 2019년부터 코인을 발행하여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시킨 경험자들로, 퓨리에버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시세조종에 쓰일 코인을 제공받는 한편, 호재성 정보 공시 등을 요청하면서 B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였음
  - 특히, D, E, F는 소위 'MZ조폭(OO파)'을 동원하여 미술품 투자수익금을 돌려달라며 갤러리 대표를 협박한 특수강도 등 혐의로 '23. 10. 13.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기소된 바 있음
- B는 MM팀으로부터 시세조종에 쓰일 퓨리에버 코인을 건네받고 자전거래봇 프로그래밍 기술자인 H에게 지시하여 코인 시세조종을 실행하였음

## 4

### 참고사항

- 이 사건 시세조종 사기 범행에는 「강남 납치·강도살인 사건」의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관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
- 다만, 「강남 납치·강도살인 사건」에 관련자들이 이 사건 범행과 별개로 다른 시기에 시세조종을 하였는지 계속 수사 중임

## 5

### 향후 계획

-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국세청·관세청·금융정보분석원·금융감독원·한국거래소·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직원들과 협력하여 전문적 조사·분석 역량과 심리분석기법 등 가상자산 수사역량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임
- 앞으로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음